

「발전기금에 관한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4. 2. 17. 개정 판 (시행 2014. 3. 1.) → 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57/compare?from=393&to=394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12:41:54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. 1.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 2.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 3.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. 발전기금 모금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. 1.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.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.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<전면개정 2014-02-17>	제5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. 1.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 2.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-02-29>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. 1.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.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.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<전면개정 2014-02-17>
제6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위원장: 대외협력처장 2. 서 기: 발전기금팀장 3. 위 원: 기획처장, 학생지원처장, 재무실장, 초청(발전기금담당자)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위원장: 대외협력처장 2. 서 기: 발전기금팀장 3. 위 원: 기획처장, 학생지원처장, 재무실장, 초청(발전기금담당자, 발전기금결산담당) 4. 임명직위원: 각 학과별 교수 1명, 5급이상 직원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<전면개정 2014-02-17>	제6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위원장: 대외협력처장 2. 서 기: 대외협력팀장 3. 위 원: 기획처장, 학생지원처장, <u>인성교육원장</u> , 재무실장, 초청(발전기금담당자(1)) <개정 2016-02-29>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위원장: 대외협력처장 2. 서 기: 대외협력팀장 3. 위 원: 기획처장, 학생지원처장, <u>인성교육원장</u> , 재무실장, 초청(발전기금담당자(1), 발전기금결산담당자) 4. 임명직위원: 교수 25명, 5급이상 전 직원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<전면개정 2014-02-17> <개정 2016-02-29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발전기금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.
1.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 2.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6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위원장: 대외협력처장
 2. 서 기: 대외협력팀장

3. 위 원: 기획처장, 학생지원처장, 인성교육원장, 재무실장, 초청(발전기금담당자(1))

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장: 대외협력처장

2. 서 기: 대외협력팀장

3. 위 원: 기획처장, 학생지원처장, 인성교육원장, 재무실장, 초청(발전기금담당자(1), 발전기금결산담당자)

4. 임명직위원: 교수 25명, 5급이상 전 직원

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